

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4조의2제2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- 1)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, 뒷부분 또는 앞·뒷부분에 설치할 것
- 2) 설치 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,5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. 관측각도

- 1)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,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.
다만, 옆면표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.
- 2)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다. 조사 방향

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

라. 작동조건

- 1) 차폭등, 후미등,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- 2)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할 수도 있는 구조일 것

마. 표시장치

옆면표시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·후미등·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광도는 별표 6의1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